

---

#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증언대회

---

일시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후 2: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 | 난민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 증언대회

사회\_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진정취지	인도적체류자들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문제 제기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네 분의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 가족들이 한국으로 올 방법이 없어 수년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언 1 HASAN</li> <li>- 증언 2 NABIL</li> </ul> </li> <li>•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으로서 체류비자가 없어 가족들의 미래가 불안한 상황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언 3 BINTOS</li> <li>- 증언 4 DIOMANDE</li> </ul> </li> </ul>
성명서	성명서 낭독 강은숙(Active Refugee Korea)
진정서제출	증언자들과 함께 진정서 제출



## [진정 취지]

### 인도적체류자들의 가족결합 및 가족구성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문제 제기

#### 1. 배경

##### (1) 인도적체류자 가족재결합

진정인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게 사증발급을 인정하지 않는 지침 운영으로 인해 가족재결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정인들은 본국에서 내전 등을 피해 국경을 넘어 한국에 입국하여 장시간의 난민심사를 겪는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를 잃은 채 체류해 왔음. 진정인들은 한국에서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국내 인도적체류자 가족의 체류 보장

진정인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결합이 되지 않아 일부 구성원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음.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범칙금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체류자격이 없어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없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단속과 추방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이에 인도적체류자들과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증언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음.

#### 2.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에 관한 현행 제도

(1) 난민법 제37조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현행 난민법은 제37조에서 가족결합에 관하여 난민인정자에 한해 명시하고 있음.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는 가족결합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난민인정자 가족결합에 관한 규정 역시 가족재결합이 허용되는 가족의 형태와 범위를 최소한의 가족단위를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부양이 필요한 가족구성원들이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가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음.

(2) 난민업무 지침

2022. 9. 자 난민업무지침은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93-94면).

라.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세분류 코드 G-1-12)

1) 기본원칙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인도적체류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족여부를 확인 후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으로 체류자격 부여(변경)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난민인정 신청 사유 없이오로지 가족과 함께 체류하고자 난민인정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 없이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신청 안내

○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를 인정하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등이 난민인정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 체류허가 불허

2) 체류허가 대상 가족의 범위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본국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 입증)되어야 함

※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실태조사 후예외적으로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 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중혼)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에 따라 배제

- (자녀) 배우자가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부모의 경우 국내에 동반 입국하여 함께 난민인정 신청 시 신병치료,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개별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제외)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미등록체류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의 체류허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가족재결합’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3.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의 권리

#### (1) 가족결합의 의미 및 보장 필요성

‘가족결합’이란,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음을 의미. 가족의 결합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으로 보호받음. 유엔난민기구는 “박해 또는 심각한 위험으로 도망친 사람들과 강제 이주를 겪는 동안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근본적인 것”으로 가정을 설명하고 있음. 인도적체류자가 새로운 국가에서 다시 삶을 일으키는데 가족들의 역할과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가족에 관한 권리는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고, 국가는 자의적으로 간섭하여 가족결합을 막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됨.

1951년 난민협약이 가족결합과 재결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UNHCR은 난민지위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에서 가족결합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음.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전권대사 회의 최종문서도 회원국들이 “난민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과 가장이 특정국가에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난민의 가족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UNHCR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도 결정문을 통해 가족결합과 재결합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반복하며 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가족구성원의 입국이 가능케 할 것을 촉구하였음.

가족결합 및 재결합은 당사자와 그 가족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 되고,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또한 가족결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난민수용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2)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실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적체류자의 모국으로의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인도적체류자의 사회통합에 관한 고민과 함께 가족결합 및 재결합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

UNHCR은 보충적 보호를 받는 사람도 인도적인 필요에 있어서는 난민 인정자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며, 받은 지위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가족결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UNHCR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대량 난민 유입시에 (large-scale influx)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진 비호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가족의 결합이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2018년 12월 UN총회가 결의한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에서는 목표 16번에서 이주민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족재결합에 관한 국가 수준의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의 10대 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인정 절차 및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의 처우를 개선할 것, 그리고 상당기간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인도적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위한 가족결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4. 마무리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이 입국하여 국내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가족재결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고자 함.



## 발언문 1 Hassan

---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Hassan 입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재결합시켜 달라는 저저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위대한 나라의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국은 민족과 문화가 있는 정통 국가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8년 이상 살았습니다. 한국 국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대우와 존경과 감사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있는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도 저는 별로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비극적인 상황을 피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존엄성, 안보, 안전, 정의, 질서, 법 속에서 살 수 있는 대안적 조국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지난 8년은 오랜 이별 탓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빨리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조국 예멘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찢겨져 나갔고 전쟁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멘에는 더 이상 우리가 피난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예멘 남부로 가족들을 이주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예멘 북부는 안보, 안전, 건강 등 삶의 조건이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나 예멘 남부의 상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예멘과 남예멘의 분리를 요구하는 남측의 요구에 따라 북예멘인을 남측에서 추방하려는 선동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이 그곳에 홀로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멘 남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예멘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말레이시아로 가족들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예멘인들에게 장기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가족들에게 몇 달의 시간만을 주었고, 제 가족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올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 기간이 곧 만료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 정부가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인도적 문제를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G1-6** 체류자격으로는는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초대하거나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 가족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요청합니다.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하였지만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거절당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장기거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과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족이 재결합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들의 임시 거주지에서서 아마도 내 아이들과 아내는 추방되어 예멘으로 다시 보내질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미지의 미래, 지속적인 무자비한 위협과 위험에서 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저와 우리 아이들의 재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제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의와 품위 있는 삶. 이것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예멘에서 우리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저는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법을 준수하고 매달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مرحبا.

انا اسمي عبده حسن الجماعي.

من اليمن. لدي زوجة وثلاثة اطفال.

اسمحوا لي في البدايه ان أشكركم جميعاً على اهتمامكم بهذه القضية الإنسانية الضرورية . وإتاحة هذه. الفرصه. نرجو منكم أن تصل رسالتي الى من يهمه الأمر . من أجل طلبي لم شمل عائلتي.ومن خلالكم. أود أن أشكر من أعماق قلبي . كوريا الجنوبيه حكومة وشعباً هذا البلد العظيم.

على ماقدموها لنا خلال السنوات الماضيه ومازالوا يقدموا لناحتى اليوم.

كوريا البلد الأصيل بشعبه وثقافته .

هذه البلد عشت فيها اكثر من ثمان. سنوات ورأيت فيها حسن التعامل والإحترام والتقدير من شعب وحكومة كوريا. ولم أواجه فيه. اي نوع.من العنصريه كما هو حاصل في بعض البلدان. الأخرى .لذلك أحببت كثير. هذا البلد.

لجأت إ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عام 2015 في بدايه .

الحرب. في. اليمن هربا.من الحرب. والوضع المأساوي . الحاصل في اليمن الى الان. اتيت ا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بحت عن وطن بديل أعيش فيه بكرامه. وامن وأمان وعدل ونظام وقانون. ومن ذلك الوقت

لم اغادر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بدا الى الان.و لم أنتقي بأطفالي وزوجتي في اي مكان.الى الان. منذو 2015 أشتاق لهم كثيراً لقد كانت الثمان السنوات الماضيه بنسبه لي بدون أطفالي قاسيه جداً وهم كذلك بسبب الفراق الطويل أتمنى أن يتحقق الحلم والتقي بهم في اقرب وقت في كوريا.

بلدي اليمن مزقته الحروب التي تهدد ارواح أطفالنا وإتساع رقعتها بشكل مستمر لم يعد هناك مكان آمن في اليمن لنلجأ إليه.

ونحمي فيه أطفالنا حيث اني حاولت.ان انقل زوجتي واطفالي.الى جنوب اليمن وخاصة مدينه عدن السنه الماضيه للعيش هناك بدل مكان إقامتهم السابق في شمال اليمن. كنت اعتقد انه افضل لهم من الشمال من ناحية الأمن والأمان والصحة.و التعليم لانه في شمال اليمن ظروف الحياة صعبة جداً من جميع النواحي. و

في جنوب اليمن. حالياً الوضع غير آمن هناك تحريض على طرد اليمنيين الشماليين من المناطق الجنوبيه بسبب مطالبه الجنوبيين بإنفصال جنوب اليمن عن شماله وهذا خطر على عائلتي ان تبقى وحيداً هناك. في جنوب اليمن لا نعلم ما الذي سوف يحصل في الفترة القادمة وبعد ذلك قررت أن اخرج أطفالي من اليمن. في الأشهر الماضيه إلى مملكة ماليزيا ولكن للأسف اتفاجئ أن الحكومة الماليزيه لا تمنح اليمنيين إقامه طويلة الأمد. فقط تعطيهم لعدة أشهر وحاليا هم في الإنتظار في ماليزيا . وربما تنتهي إقامتهم في القريب العاجل.

ونأمل من الحكومه الكوريه ان تنظر في قضيتي الإنسانية الضرورية بعين الاعتبار.وان يكون هناك حل لقضيتي الإنسانية من حكوم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تسمح لهم بدخول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لأنني لا استطيع ان أدعوهم او اقدم لهم عبر السفارة الكورية في ماليزيا بسبب

وضع إقامتي G1-6 عندما اذهب اقدم لعائلي تأشيرة لدخول كوريا يتم الرفض على الفور وايضا إقامتي الحاليه لاتسمح لي بلم. الشمل. وحالياانا وعائلي نشعر بقلق وخوف. شديد جداً عندما تنتهي . إقامتهم المؤقتة بماليزيا.ربما يتم ترحيل أطفالتي وزوجتي وإعادتهم مرةً أخرى إلى اليمن وانا لم التقى بهم. اتمنى منكم مساعدتي وإنقاذ أطفالتي من المستقبل المجهول . والخطر المحدق بهم بشكل مستمر بلا رحمة لم شملنا بأطفالنا اصبح امرأ ضروري لا يتحمل التأخير أكثر من ذلك .

أنا أحب أن أعيش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أطفالتي بجانبتي لأسباب كثيره منه توفر الأمان. والعدل والحياء الكريمه للأسرة وهذا للأسف مانحنُ محرمون منه في بلدنا اليمن .

كما اني ملتزم بالقانون الكوري حيث اني اعمل بعقد رسمي مع شركه وملتزم بدفع الضرائب والتأمين الصحي شهريا. دون تأخير.

وفي الاخير تقبلو مني خالص الشكر والتقدير والاحترام لكم جميعا .

## 발언문 2 Nabil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예멘에서 온 나빌이고 한국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네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조국인 예멘의 전쟁과 정치적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예멘에서 4년을 이곳저곳 떠돌았습니다. 저는 겨우 아이들과 아내도 예멘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살던 도시를 벗어나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데리고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예멘인들이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체포 및 추방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거주권이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립학교는 장기 거주 비자자가 없는 학생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매우 비싸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권리도 없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몇 달을 빼고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고 걱정도 됩니다. 제 유일한 꿈은 제가 아이들과 아내 옆에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불과 물을 동일시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평화롭게 살수 있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하고 꿈꿔야 하는 가족은 공평하고 평등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과 박해가 두려워 조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과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조국에서의 삶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너무 가혹하고 저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결함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결함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매우 큰 위험에 노출시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에게는 내 아이들을 구하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اولاً أشكركم على إتاحة هذه الفرصه لي بالتحدث هنا كما أشكر كوريا حكومتنا وشعباً على ماقدموه لنا في السنوات الماضيه .

أنا إسمي نبيل من اليمن مقيم في كوريا منذُ تسع سنوات لدي زوجه وأربعة أطفال .  
لجأتُ إلى كوريا الجنوبيه هرباً من الحروب والأوضاع السياسيه في بلدي اليمن وبعد أربع سنوات من سفري من اليمن إستطعت أيضاً أن أقوم بإخراج أطفالي وزوجتي من اليمن وقد كلفني هذا الكثير من المال وذلك من أجل لا يتم منعهم من السفر والخروج من المدينه الذي كانت عائلتي تعيش فيها وبعد ذلك أتيت بهم إلى ماليزيا وهي من الدول الذي لا تطلب من اليمنين فيزه قبل السفر الآن أطفالي يعيشون في ماليزيا وليس لديهم إقامه قانونيه تسمح لهم بالعيش بأمان دون الإعتقال والترحيل كما أن المدارس الماليزيه لاتقبل تسجيل الطلاب الذين ليس لديهم إقامات طويلة الأجل فقط يحق لهم الدراسه أونلاين في مدارس خاصه برسوم دراسيه كبيره جداً كما أنه ليس لهم الحق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تأمين الصحي وتكاليف المستشفيات مرتفعه جداً لقد عانيت الكثير منذو تسع سنوات ولقد أنفقت الكثير من المال ومع ذلك لم أستطيع أن التقي بأطفالي منذُ تسع سنوات سوى بضعة أشهر أشتاق لهم كثير والقلق من المجهول يلحقتني كل يوم. أصبح حلمي الوحيد أن أعيش بجانب أطفالي وزوجتي هل من العدل المساواه بين النار والماء وهل من العدل والمساواة بين أسره تعيش بسلام وأسره تتمنى وتحلم أن تعيش بسلام وهل من العدل أن نعيش نحنُ هنا بأمان وأطفالنا يعيشون بقلق مستمر إلى متى يستمر حالنا هكذا ونحنُ بعيدين عن أطفالنا لانستطيع العوده إلى بلادنا خوف من الموت او الاضطهادبسبب الحرب والأوضاع السياسيه والإقتصاديه بلدي أصبحت الحياه فيها شبه مستحيله المعاناة وصلت لأقصى درجه لم نعد نستطيع تحمل كل هذه الظروف القاسيه التي نعانيها والذي لم نذكر منها سوى القليل جداً أصبح الإستعجال بلم شملنا بإطفالنا والإطمئنان عليهم بجانبنا امراً ملحاً وضرورياً بل ومشروعاً من الجهه الإنسانيه وتأخير هذا الأمر يزيد من مخاطر تعرض أطفالنا لمخاطر كبيره جداً وانتم في مقدوركم مد يد العوان لإنقاذ أطفالي وما يقتضيه الأمر من الجانب الإنساني متمنين من سيادتكم النظر لمطلبنا بجديه تامه ولكم مني جزيل الشكر والتقدير.

## 발언문 3 Bintos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가족결합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법무부로부터 G1-6 비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구 출입국에 인도적체류자의 가족비자를 신청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2017년부터 미등록으로 체류했다는 이유로 출입국은 저에게 25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Nancen에 벌금을 줄이기 위해 부탁을 했습니다. Nancen에서 대구출입국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벌금을 낮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가족결합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가족 재결합은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불안감을 감소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항상 자신을 숨기고 생활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강제추방은 물론 가족 해체, 가정경제 파탄, 더 엄격한 출입국 처벌과 재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인권위가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가족결합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이익은 너무 소중한기에 무시되서는 안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인권위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I would like to ask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ion family reunification for my human rights and children's rights. My wife and two children were granted for humarian G1-6 by the Minister of Justice. I applied for a family visa at the immigration. I submitted all the documents required for the visa in Daegu immigration. But I was not recognized as a refugee status. I have been over stayed in the country since 2017. They told me to pay the penalty of 25,000,000 won. I made a petition with Nancen to reduce the fine. After contacted Daegu immigration by Nancen, they can't lower the fine.

So we are making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sking them to guarantee family's reunification for humanitarian status holder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to meet children basic needs and to expand their opportunities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family. Reunification will promote better mental health and reduce anxiety and happier lives for children. We are hiding ourselves all the time as we are undocumented in South Korea. Life can be difficult and the risk is high. Getting caught means removal and deportation from the country but it also may break apart a family, disrupt the family's finances and result in stiffer immigration penalties and a ban on reentering the country. I hope human rights commissions make more reliable solutions. The long term benefits of reunification are far too valuable to ignore. I would lik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consider our case for better life.



## 발언문 4 Diomande

가족 재결합의 이점: 가족 재결합은 더 나은 정신 건강을 촉진하고 불안을 줄이며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재결합을 통해 가족은 이러한 연결, 전통 및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재결합은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안정과 더 강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정서적, 경제적 지원의 원천임을 인식합니다.

이산가족의 단점: 어려운 상황, 자존감 저하, 우울증, 학대 성향, 감정적 상태 등을 만듭니다. 물건, 음식, 옷을 살 돈이 적습니다.

가장의 책임: 가장은 매월 집세, 가스비, 전기세, 가족 보험료, 병원 치료비, 의복, 교육비 및 급식비를 지불합니다.

가장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위의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가족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장이 신분증이 없으면 가족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벌금도 지불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돈을 모을 수 없고 가사에 조금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난민으로서 한국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재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 신분으로 한국에 도착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세 자녀를 둔다는 것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5개월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며, 저 혼자서 이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함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출입국관리국에서는 2023년 말까지 25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내년 2024년에는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남편은 한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분증도 없고, 저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3번 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재결합을 위해 남편이 인도적 체류자격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도적체류지위자 드림.

ADVANTAGES OF FAMILY REUNIFICATION: Family reunification promotes better mental health, reduces anxiety and brings happier life for children. Through reunification, families can maintain those connections, traditions and cultural identities. Reuniting families is not only humane, but also recognizes that, for many people, families are source of emotional and economic support, and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stronger communities.

DISADVANTAGES OF BROKEN FAMILY: Creating a difficult situation, poor self esteem, depression, abusive tendencies and emotions etc. Less money to pay for things, less food and clothes.

THE RESPONSIBILITY OF A FAMILY HEAD: The family head pays house rent monthly, gas bills, electricity bills, the family insurance fees, hospital treatment bills, clothing, educational fees and feeding.

If the family head is split from the entire family, how would he/she be able to provide those above family basic needs? Eventually, the family will suffer a lot. If the family head has no id card,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provide the family basic needs and also to pay the fine. The part time job can not generate funds, only help a little in domestic affairs. We are pleading, as refugees. Please reunite our family in order to sustain our lives in korea.

Meanwhile, we have gone through many struggles since our arrival in Korea as a refugee. To have those three children without a job, it is a disaster.

My husband as a family head had a knee surgery five months ago. He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nything in the house. WE have to be united otherwise I alone cannot support all these family need. We are still paying his knee surgery bills .

Moreover, Immigration said he must pay his overstay penalty which is 25,000,000 won before the end of this year 2023 otherwise next year, 2024, it will be increased to 30,000,000 won. If we did not pay. How are we going to be able to pay that fine? There is no id card that will enable him to get a work permit in korea. I have been doing part time work which is not permanent, it is a temporary job two to three times a week.

We are desperately in need of your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ach to immigration on our behalf in order to reunite our family by issuing my husband our humanitarian status Id card.

Thank you in advance.

From the humanitarian status holder

## [성명서]

한국정부는 인도적 체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정부는 2013년 난민법을 시행했고 올해는 난민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난민법은 인권선진국을 위한 초석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민들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한국의 비호를 구하러 온 난민들은 구금시설에 갇히고, 난민심사는 조작되고, 온갖 불평등한 권리의 제약 속에서 알아서 생존하도록 놓여져 결국 거리로 나와 단식을 하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체류자’라는 마치 ‘인도적’이어 보이는 체류자격은 이보다 더 비인도적일 수가 없다.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비인도적인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 할 근거가 있음을 인정해서 부여한다는 ‘인도적체류자’ 지위는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그 숫자가 매년 난민인정자 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결국 난민법은 ‘난민인정자’ 보다 ‘인도적체류자’라는 자격을 더 많이 생성해 내고 있지만 인도적체류자의 처우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인도적체류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도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1년의 짧은 체류만 주어지고, 영주자격, 귀화 등 장기 정착의 길이 차단되어 있어 한 인도적체류자의 표현에 의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특히나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이 많은 국가일수록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지위를 받은 뒤 가족을 부르려고 했던 인도적체류자들은 가족들을 만날 길이 없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부 가족들이 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경우도 있다. 기약 없이 가족들이 다시 함께 사는 날만 손꼽아 바라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을 구성한 인도적체류자도 마찬가지이다.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나 가족구성원들이 미등록의 상황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단속이 된다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으로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올 길이 없다. 때문에 언제 가족들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늘 놓여있어야 한다.

인도적체류자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안정적인 미래를 기약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인도적체류자들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할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모든 이주민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들로 취급하여 마치 그들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와 형제들이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무지와 무관심 차별 속에서 호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찝찝찝찝 주어지는 권리마저도 인도적체류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인도적체류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들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만 쓰고 원치 않으면 쫓아내고, 감옥 같은 환경 속에 가두고 힘들면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은 존엄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난민법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인권국가로서 보여지고 싶을 때마다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난민의 인권은 존중 받지 못하고 있다.

인도적체류자들이 가족을 구성하여 한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국정부가 인도적체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19일

참가자들 일동